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9

2018-9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6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방향을 위한 의정토론회 등 2건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 개최 등 7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근로기준법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상북도 청송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질의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13)
- ▶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5)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18)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0)
- ▶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
- ▶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29)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방향을 위한 의정토론회 (32)
- ▶ 청양 강정리 석면 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39)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시의회,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 개최 (48)
- ▶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발표 (49)
- ▶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50)
- ▶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본격 스타트 (51)
- ▶ 전북도의회, 인권조례의 실효성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52)
- ▶ 전남도의회,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운영 (54)
- ▶ 베트남 동나이성 부성장 일행, 경남도의회 방문 우호교류 증진 도모 (55)

최근 제·개정 법령

- ▶ 근로기준법 (57)
- ▶ 아동수당법 (58)
- ▶ 노인복지법 (59)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 ▶ 공무원연금법 (6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경상북도 청송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질의 (63)
- ▶ 경상남도 진주시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질의 (68)
- ▶ 경기도 고양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질의 (74)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90호, 2018. 8. 23., 일부개정]

□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자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12.30.]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전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기금)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재선정에 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동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 2016.12.30.>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 중인 기업
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미래전략국장, 협치정책기획관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제목개정 2016.12.30.]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96호, 2018. 8. 23., 제정]

□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기능과 통행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 ③ 보도 시설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 시설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 및 통행구조 개선에 우선권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③ 보도 정비 시에는 포장디자인, 기능, 통행구조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에는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보도의 노후 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으로 기존의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에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공사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등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에 있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구조물 등은 공사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도지사는 보도용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8. 9. 1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39호, 2018. 9. 10., 제정]

□ 주요목적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
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4.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 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502호, 2018. 8. 31., 일부개정]

□ 주요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은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망 구축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보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
3. 보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
4. 군 의회 의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검사·변호사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 및 교육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8.31.〉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9. 6.]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282호, 2018. 9. 6.,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보존 및 활용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의원과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와 함께 시작되고 회의 종료 시 만료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정)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문화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 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2조(지원) 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유지·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9. 6.]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287호, 2018. 9. 6., 일부개정]

□ 주요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① 구 대책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2018. 9. 6.〉

②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장 (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④ 구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19>,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안전도시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국장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常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구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② 구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구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구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의 전환)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7호>

1.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의 전환

5.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0.]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32호, 2018. 9. 10., 제정]

□ 주요목적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
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전문가
3. 범죄예방 등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및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96호, 2018. 9. 3., 제정]

□ 주요목적

「아동수당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6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계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아동수당플러스”란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또는 추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금액 등)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정지 및 환수 등은 법과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6조(지급대상) 시장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6세 미만의 아동 중,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영 제3조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는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아동수당플러스는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는 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은 아동수당플러스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지급시기 등) ① 동장은 접수한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요건을 검토하고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아동수당플러스는 매월 25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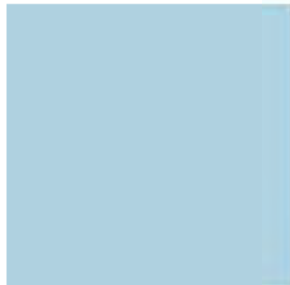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플러스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해당 월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지급)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아동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플러스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아동에게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및 환수는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8. 28.(화), 14:00~16:30/ 온양문광호텔 아이비홀 >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현 주소와 올바른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논의 하여 노동자가 더 행복한 노동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충남의 일자리 양은 전국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일자리의 질은 낮으므로,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기 본권과 생활임금 등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성과와 능력 이외의 요인 으로 차별받지 않는 공정노동이 실현되는 차별 없는 일터의 확대가 요구되며,
 -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 중층적 소통의 채널이 유기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는 지역주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주일 충남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 충남의 노동정책은 충남지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충남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노동권의 보호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역할로 충남의 일자리 양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 서산 당진의 불법 파견 등 일자리 질이 문제임.
- 충남의 효과적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의 정보공유와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추진 거버넌스와 노동인권센터의 팀 워크와 인적구성이 핵심이므로,
- 노동정책협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중층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마당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평가와 조정 이후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종합토론(6인)

①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충남의 노동정책은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권익 존중, 노동가치 실현, 노동환경 개선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그간의 노동정책 추진결과를 보면,
 - 2017년은 노동정책 시행계획 원년으로, 향후 5년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데 집중하였으며,
 - 2018년 하반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과 중간지원조직(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지역노동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반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노동정책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구현 기반 확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7대 핵심노동정책추진, 충남 사회적 대화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그리고 도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함.

② 권혁주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부의장)

- 충남의 노동정책은 제도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있지만, 정보공유 등 소통의 부재와 노동정책 실현의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는 소외된 사용자 측과 정부 측의 전문가들만의 소통으로 인해 협치 이전에 소외 없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 취업난은 청년계층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중장년층 여성의 사회 진출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진출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제언함.

③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본부장)

-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것 등의 불법파견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며,
-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컨설팅 그리고 노동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 운영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례로 서울시의 현재 실질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함.

④ 윤권종 (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이 다양화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면서 고용불안정,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 및 복지혜택 차별대우 등의 문제점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도 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 2017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은 충남 64.1%, 전국 61.4%로 충남이 전국 평균 보다는 높으며, 실업률은 충남 2.6%, 전국 3.2%이며 전국비율 보다는 다소 낮고,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충남 31.6%, 전국 32.7%로 전국의 비율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낮음.
-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충남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⑤ 최만정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 충남노동정책협의회 위상과 사업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도내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협의회 산하, 또는 협력체로써 도내 주요 노동정책 집행실무 그룹을 두어야 하며, 인적구성은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져야 할 것임.
-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현실과제로써 근로자를 노동자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야 하며,
- 충남도와 산하기관 및 지자체가 모범사용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부문까지 노동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함.

⑥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 충남의 노동정책을 노동자 및 산업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공통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체제를 심화시키는 외주화 구조를 띠고 있음.
- 따라서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남성 중심의 제조업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은 충남 노동의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수립된 노동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정책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강화방안이 필요함.



3 자유토론(질의답변)

- 충남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실행과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 포럼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권익센터, 산재보호센터와 노사민정 협의회 제기능이 요구되므로 지역(시민단체)에서의 다양한 의제와 의견제시 바람.
-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노동기본계획의 23년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동교육문화센터 추진을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함.

[추가발언 :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시·군에서 노동정책에 관해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선별하여 다른 시·군까지 지원하여 도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검토바람.

[추가발언 : 최만정 충남참여자치지역연대]

-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권센터 등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함.

[추가발언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 ⇒ 노동환경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우선 개선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단순 참여를 넘어 충남노동정책을 민관협치로 구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어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 주요정책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특히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부위원장]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남노동정책협의회의 실질적 협력체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산하에 주제별, 대상별 소위원회의 필요성
2. 노동계,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3. 충남의 사회적 대화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해 노동자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충남노동정책협의회는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충남도내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실행 및 점검해야 함.
- 충남노동정책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정협의회 등 중층적 소통의 채널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역주체의 의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양 강정리 석면 광산 폐기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18. 9. 3.(월), 14:00~16:30/ 충남도청 회의실 >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주민과 도의회가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며, 강정리 사태 해결방안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강정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강정리 사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함에 공감하고
- 앞으로, 강정리 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강정리 그리고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행정처리 및 정보공유가 필요함에 공감하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하승수 前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사업자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유일한 사례로써, 그로 인해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의 각종 위법 사실도 논란이 됐다고 설명함.
- 한편, 산지복구에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순환토사를 사용하고자 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 충청도와 청양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상조사 작업이 시행돼야 할 것이며,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가 최종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 대하여 주장함.
- 도의회는 가칭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정리 실태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종합토론(6인)

① 이선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 강정리 사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도와 청양군이 책임 있는 조치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함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깊은 책임을 느끼며,
-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 보다 적극적으로 강정리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서 주민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함.

② 이상석 (前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강정리 마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행정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문제점만 나열하는 대안 없는 행정 처리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신을 더 깊게 만들 것이므로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선결문제임.

③ 권혁호(강정리 주민대책위원회 前 위원장)

- 강정리의 석면 폐광산에 대한 산지복구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산지관련 법령에 따라 완벽히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 강정리와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매개로 부정확한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현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예 : 태양광 발전사업)

- 道와 청양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히 폐질환과 관련해서 강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연석면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석면을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예로 안동시는 석면폐기물 처리 예산을 수립 후 현재 실행을 계획 중이라고 말함.

④ 김범수(충청남도 정책기획팀장)

-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업체 이전 이후에 산지복구를 원하는 것으로, 산지 복구 문제의 경우 양질토사 교체와 관련하여는 판례(선고2014구합1484)와 일부 주민들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산지복구에 대한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양군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는 소가 제기되어 강제할 수 없고 폐기물 불법매립 등 의혹관련에 대한 검찰에 대한 현장조사 영장청구는 위법사실을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 관계로,
 - 권혁호 주민대책위 전 위원장님 등을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음.
 - 영장의 재청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공무원은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공무원의 업무특성의 한계점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⑤ 조성현(청양군 환경보호과장)

- 청양군은 많은 주민들이 석면폐증으로 고통 받는 등 시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2013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사업체 이전과 산지복구를 위한 용역예산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산지복구 진행이 50% 이루어진 상태에서 산지복구를 다시 하기위해 순환 토사를 걷어낼 경우 여기에 포함된 석면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 이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기 바람.

⑥ 이달주(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이장)

- 2017년 12월에 다양한 전문가와 구성된 '강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논의한 결과인 폐기물 업체 이전 및 양질의 토사로 산지복구 요구를 밝힌바 있음.
- 다만, 산지복구는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직무이행명령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함.

③ 자유토론(질의답변)

- 청양군에서는 매입을 위하여 산출 근거를 용역을 통해 마련 후, 사문석이 포함된 광맥 19,000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감정의뢰를 한 상태이나, 道 재원의 투입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추가발언: 청양군]

- 직무이행명령 및 영장청구는 특위나 소위원회보다 앞서 실행했어야 함. 왜냐하면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불법을 하고 있으면 강제력을 행사했어야 함.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대응을 요함.

[추가발언: 하승수]

- 산지복구는 산지복구계획서에 따라 산리관련법령에 따라 완전하고 완벽한 복구를 해야 함. 덮는 식의 피해복구로는 침출수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완전하고 완벽한 복구가 필요함.

[추가발언: 권혁호]

- 금번 의정토론회에서 강정리 주민을 제외시킨 듯한 점이 아쉬우며,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임. 제3자의 개입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의 자체적인 의지와 원하는 해결방안으로 맡겨주길 바라며, 강정리 주민들은 원상복구의 문제보다 업체의 이전이 가장 큰 요구사항임.

[추가발언: 강정리주민 명예승]

- 현재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끼리 미봉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충남시민사회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한 원상복구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임.

[추가발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최만정]

- 석면은 건드리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을 것이며, 원상복구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루빨리 업체를 인수하여 폐기물을 덮길 바라고 있음.
- 현재 석면토사는 강정리부터 양산리까지 광범위하게 덮여있으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의 위험이 있어, 부지 매입을 하여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주길 바람.

[추가발언: 청양군 주민 최문식]

○ 소위원회가 강제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청 특별사법경찰팀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공주시청에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영장청구 증거를 주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청이 적극적인 의지 없이 처리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음.

○ 또한, 폐기물처리 업체는 타지역에서도 거부할 것이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과 완벽한 산지복구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는 잘 생각보아야 할 것이나, 본인의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함.

[추가발언: 청양군 김기태]

○ 강정리 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그동안 매립되어온 폐기물의 원상복구는 그 과정에서 석면이 날려 주민들의 건강권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덮여지길 원함.

[추가발언: 강정리 청년회장]

⇒ **강정리 사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그동안 이 사태를 방치한 관의 문제 해결 과정을 되돌아 보아야하며 떨어진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접근하였다고 판단되며 추후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의 보다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부위원장]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강정리 문제의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2. 주민 및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간의 투명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해야 함.
-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와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음.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정책기획팀), 청양군(환경보호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 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9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시의회 본관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 장기기증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서약식은 「제5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사회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서약식에는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등 장기기증 서약을 한 서울시의원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준비한 장기기증 등록 부스와 서약자들을 위한 포토존이 운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지난 9월 5일(수) 개최된 「제5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로 위촉된 바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발표

-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재추진 촉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분권의 강화에 대한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김진홍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앞서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국회에 적극 요구하고 동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를 소관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부산시의회 47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미, 4차례의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만이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이마저도 뒷전이고,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입법 제한,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양 일괄법은 단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분권개헌의 의지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9월1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 결의문」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베트남 하남성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9월 7일 오후2시 광고 테크노밸리 경기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2018 베트남 하남성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가 양 지역 간 경제 분야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65개 기업이 참가했다. 또한 경기 중소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코트라 지원단 등 경기도 주요 경제인단체가 함께했다.

송한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하남성인민의회 대표단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투자 유치 대상을 대기업보다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를 부탁”하며 “하남성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기업인들에게도 경기도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좋은 정책의 파트너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성인민의회 팜 시 로이 의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하남성의 투자 환경과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고, 김앤장법무법인 여옥준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에 따른 관련 법률을 상세히 소개했다.

하남성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제핵심지역으로 125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경기도의회와 하남성인민의회는 지난해 10월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올해 4월에는 하남성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베트남 하남성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과 하남성 친선의원연맹 소속 박근철 회장(더민주, 의왕1),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더민주, 성남3) 등이 함께했다.



충청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본격 스타트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불평등 해소 등 정책대안 제시 -

11대 충북도의원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를 열어 '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고찰 연구', '충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충북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사·의결했다.

의원 연구활동은 도의회 내부규정 상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또는 의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연구회'는 충북의 독립운동사와 독립 운동가에 대한 고찰과 체계적 정리, 신체호 문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상식 의원을 대표로 최경천, 김기창, 서동학, 송미애 의원이 연구활동을 함께한다.

'충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연구회'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분석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의원을 대표로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의원이 참여한다.

육미선 의원 개인이 신청한 '충북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 목표 설정과 의제 발굴을 통해 이를 조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3개의 연구활동은 이달 10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세미나·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연구활동 성과는 향후 입법 및 정책 대안제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선배 의장은 "의원 연구활동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책화 과정"이라며, "연구모임 활동이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인권조례의 실효성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조례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강화 필요
- 인권센터의 조사구제의 기능강화 및 전문인력 보강
- 14개 기초 지자체와 연계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운영 필요

전라북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목)오전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상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인권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주최한 행사로, 신양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두세훈(도의원), 최창현(전북도 인권위원), 염경형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영선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로는 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해, 인권전담 행정조직을 만드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전라북도 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인권센터의 조사구제의 기능강화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두세훈 도의원은 “필요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인권 전문가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최창현 전라북도 인권위원은 “바람직한 인권도정을 위해 인권위원회 권고 권한을 명시하고 인권센터의 직권조사추가, 조례에서 당연직 인권위원 삭제후 도민참여형 인권



위원 추가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청구권 명시, 인권센터의 외부전문가 적극채용을 주장”했다.

또, 염경형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바람직한 인권도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전담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라북도의 인권조례제정은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적인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도정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차후 행정자치위원회 발의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본격 운영

- 56개교 1,200여명 참여, 의장 선출 및 조례안 처리 등 모의 의회 체험 -

전남도의회(이용재 의장)는 9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56개교 초·중·고교 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1일 도의원’으로 위촉되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조례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진행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9월중에는 6일 3개교(여수 여도중, 담양중, 해남제일중), 72명을 시작으로 총 15개교 344명이 참여하게 되며, 지역구 도의원도 참석해 참가학생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용재 의장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자치와 대의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장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2009년부터 도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3개교 9,991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베트남 동나이성 부성장 일행, 경상남도의회 방문 우호교류 증진 도모

베트남 동나이성 응웬 꾸억 흥 부성장 등 9명은 12일(수)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날 방문은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경상남도의회와 동나이성의회간 우호 교류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경제·농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

경상남도의회 김석기 사무처장은 환영인사에서 “부성장님의 방문이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등 경남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동나이성 응웬 꾸억 흥 부성장은 방문 인사에서 “양 기관간 경제·농업분야 등 교류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베트남의 대 경남수출액은 3억 달러, 수입액은 15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이므로 양 도·성이 경제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 17,355명과 결혼이민 여성 7,418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근로기준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 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주요내용

-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기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
-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제56조제2항 신설).
- 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개로 제한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제59조).
-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제69조).

2. 아동수당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제13조).

3. 노인복지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지·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지·휴지 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함(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9조의6).

라.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9조의13).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제39조의20 신설).

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제55조).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 신설).

다.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21조 제2항 신설).

5.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제48조 및 제49조)

-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신청구제도를 둠.
-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의견18-0174, 2018. 8. 27., 경상북도 청송군]

【질의요지】

가.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500미터 이내의 토지소유자 80%의 동의 및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1,0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80%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500미터 이내의 토지소유자 80%의 동의 및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1,0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80%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제2호)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대법원 2017. 4. 7. 2014두37122 판결례 참조)이므로, 특정 지역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한필지의 일부만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해석례(법제처 2014. 1. 16. 법령해석례 13-0561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만약 청송군 지역 중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송군 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가능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송군에서 청송군의 실정 등을 고려한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송군 지역 전체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정도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청송군 지역 전체를 청송군조례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 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500미터 이내의 토지소유자 80%의 동의 및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1,0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80%의 동의를 받도록 청송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해당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려는 경우 가축사육으로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4. 9. 의견제시 18-0059 참조).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500미터 이내의 토지소유자 80%의 동의 및 해당 가축사육 예정지 반경 1,0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80%의 동의를 받도록 청송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의견18-0616, 2018. 9. 10., 경상남도 진주시]

【질의요지】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나. 폐기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

다.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진주시특별회계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진주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이하 “진주시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으로 인해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위법령 부칙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484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2017. 5. 18. 의견제시 17-0071 참조),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진주시특별회계조례 제1조)으로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과 부과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7. 5. 18. 의견제시 17-0072 참조).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주시특별회계조례 제6조에서는 진주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에 배분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출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진주시기금조례에 따른 진주시기금 등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진주시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61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질의 가에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 특별회계조례에 진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그 존속기한을 관련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진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 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의견18-0173, 2018. 9. 11., 경기도 고양시]

【질의요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 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 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에 대하여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제3호) 등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같은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시설면적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시설면적이나 전용면적 기준이 아닌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단서를 근거로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비고도 별표 1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에는 비고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같은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규정과 달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 년 9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